

자.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(제16조)

- 1) 공무원은 자신,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·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함.
- 2)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거래 등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, 직무 대리자나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, 직무 재배정 또는 전보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8년 1월 16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 김부겸
장관
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
●대통령령 제28588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열량·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광고 시간제한 및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를 2018년 1월 26일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마련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8년 1월 16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 김부겸
장관
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
●대통령령 제28589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